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 분야 주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1. 29.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학교보건법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가능, 전 생애주기 검진결과통합관리체계 구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이자면제 대상을 5구간 이하(기존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고등교육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법적 기반 확립	RISE 거버넌스·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적 기반을 확립하여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지방대학육성법	중앙의 지방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이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원지위법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 학교장이 긴급조치 가능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는 불합리성 개선, 교사의 부재로 발생한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 근거 마련	실손의료비 급여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가입자 편익 증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등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다.

※ 국정과제(85-2) '지역 기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관련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실시

향후,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면 위탁 실시에 앞서, 현재 실시 중인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시범 사업 실시 지역 : ('24) 세종, 강원 원주 → ('25) 세종, 강원 원주·횡성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시행: 2026년 7월 1일)

청년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게만 이자면제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면제가 확대된다. 이에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 기간 중 이자가 부과되거나 상환기준소득('25년 기준 2,851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해소하였다.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하였다.

※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5~6>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관련

라이즈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등을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라이즈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도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26년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을 조성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 학생)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된다. 또한,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의료비 보장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 학교급식법(시행: 공포 후 1년 / 일부 조항 별도 시행*)

* (제7조제1항) 2027년 7월 1일부터, (제15조의2)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인력 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4-203-6267)
		담당자	사무관	김지애 (044-203-62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윤혜준 (044-203-6981)
		담당자	사무관	나수정 (044-203-6945)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교원지위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서기관	성미정 (044-203-6498)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책임자	과 장	이종원 (044-203-6500)
		담당자	사무관	배성주 (044-203-6484)
<학교급식법>	학생건강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담당자	서기관	김동로 (044-203-6543)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

④ -----제1항-----

-----.

⑤ -----위
탁받은 공단은-----

-----.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생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위탁 등에-----
-----.

<p>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생략)</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p>

<p>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u>이 부과·징수한다.</p>	<p>-----</p> <p>-----.</p> <p>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보건복지부장관</u>-----.</p>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p>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략)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

-----보건복지부장관-----

③ -----
-----보건복지부장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보건복지부장관-----.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라 한다)를 둔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

<신 설>

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
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
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대
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
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신 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

·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도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 전담기관”라고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도는 각 지역 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설립하려는 관계 시·도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6(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도 상호 간 및 시·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신 설>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처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도지
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
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
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
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
축·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국가와 시·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와 사업수행주체에

<신 설>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한다.

제59조의10(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

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
2.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

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신 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59조의10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효과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를」 제8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며,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적용 중인 규제특례는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특례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볼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 6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u>”이란 <u>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u>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u>기본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u>정책목표</u>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p>2. (생략)</p>	<p>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u>시·도</u> 기본계획의 수립) ①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u>시·도지사</u>”라 한다)는-----</u> ----- ----- -----<u>시·도 기본계획</u>----- -----<u>시·도 기본계획</u>----- -----.</p> <p>② <u>시·도 기본계획에는</u>----- -----.</p> <p>1. ----- -----<u>시·도의 정책목표</u>----- -----</p> <p>2. (현행과 같음)</p>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생략)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생략)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시·도의 재원 확보에-----

4. -----
-----시·도의 행정적-----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2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단서 삭제>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시·도 시행계획-----

②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거쳐야-----.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의2(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제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신 설>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세부 지원전략 및 지난 해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시·도 기본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
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
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
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
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
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

<삭 제>

<삭 제>

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 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 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삭 제>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삭 제>

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
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
회의-----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제>

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삭 제>

<삭 제>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

<삭 제>

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삭 제>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 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

<삭 제>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 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생략)

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⑬ -----
-----조치를 받
은 경우, -----
-----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

⑭ (현행 제10항과 같음)

⑮ (현행 제11항과 같음)

부 칙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제9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u></p>
--------	---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 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른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 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p>
<p><u><신 설></u></p>	<p>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p>

<p><u>제26조(과태료)</u> (생략)</p>	<p><u>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28조(과태료)</u> (현행 제26조와 같음)</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붙임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u>학교급식</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u>----- ----- -----<u>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u>----- ----- ----- -----</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학교급식종사자</u>”라 함은 제6조에 따른 <u>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u></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u>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u>계승·발전을 위하여</u></u></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u>영양·식생활교육</u>----- ----- -----<u>계승·발전</u>-----</p>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

<삭 제>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

7. 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1. 제3조의2제3항-----
-----시행계획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

----- . <단서 삭제>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

⑤ 제4항-----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의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